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의 이해

차 례

1. 종 합 소 득 세

2. 근로소득 연말정산

1. 종 합 소 득 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6가지)

거주자 개인별 1년 단위 합산 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사업포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분류과세소득(2가지)

개인별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다음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총 수 입 금 액

(+) 귀속법인세

(-)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필요경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총 합 소 득 금 액

(-) 총 합 소 득 공 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기본세율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2014년 귀속 분부터)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5,000만원 초과 ~	3,760만원 + (과세표준 - 15,000만원) X 38%

종합소득세율 (속산표) : 실무적으로 주로 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2014년 귀속 분부터)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5,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종합소득세

□ 소득세 신고 납부

-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상속 : 상속개시일까지, 해외이주 : 출국일 까지)
- 소득세 납세지 : 주민등록상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
- 1년에 소득세 신고납부 2회
 - 중간예납기간 : 매년 01.01.~6.30. , 신고납부기한 : 11.01.-11.30.
 - 확정신고대상기간 : 01.01.~12.31. 신고납부기한 : 다음해 5말일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http://www.hametax.go.kr>) 전자신고 가능
 - 수동신고 :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 신고 : 세무사에게 기장 또는 신고 대행의뢰 후 신고
- 소득세 분납기한(신청요건 :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 초과시)

구 분	분납기간 및 분납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 만원 이하	7월 31일까지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 만원 초과	7월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의 1/20이하 금액

* 분납기간 동안 가산세가 없으므로 분납세액을 단기자금으로 운영해야 함.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인 급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임
CF) 강사, 고문, 샤이닝보너스(스카우트), 파견근로자 사업주가 지급
하는 수당 등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EX) 강사, 경영자문용역 등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 시 원천징수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인 급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임
CF) 강사, 고문 등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제

과세표준

일반근로소득

매월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이용) 후
연말정산에서
세액 결정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제

과세표준

일반근로소득

매월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이용) 후 연말정산에서
세액 결정

-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 포함)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co.kr)→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건표)(한글, 엑셀, PDF 다운로드)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2015.7.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 간 근 로 소 득

(-) 비과세소득

총 급 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일 용 근 로 소 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간이세액표 적용)
 -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음
 - * 일 총급여액이 137,000원(결정세액 999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 사업장별 판단(원천세과-216,2011.04.08)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 간 근 로 소 득

(-) 비과세소득

총 급 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용자 소유 주택 : 무상, 저가 제공
 - 사용자 직접임차 주택 : 무상
 - * 직접임차주택의 경우 종업원이 임차료 일부 부담 시 사택 아님
 -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 제

과 세 표 준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이 받는 수당 등
-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월 20만원)
 - 일직료, 숙직료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 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월정액급여 = 1 - 2

1 : 매월 받는 급여 총액

2 : 부정기적 급여(상여 등), 실비변상적 급여

◎ 공장, 광산 근로자

- 공장건설일용근로자는 미해당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 ◎ 학자금
 - 법에 따른 학교 등 교육기관의 수업료로서 업무관련성, 사업장 지급기준, 6개월이상 교육시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
- ◎ 육아휴직급여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 위자 성질의 급여
 - 산재보험료와 유족보상금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위자 성질의 급여
-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 식사 또는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 자녀보육수당
 - 출산 및 6세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 근로장학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 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750\text{만원} + (3,380\text{만원} - 1,500\text{만원}) \times 15\% = 1,032\text{만원}$$

→ 근로소득금액

$$3,380\text{만원} - 1,032\text{만원} = 2,348\text{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 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공 제

추 가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그밖의 소득공제

소 득 공 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구 분		나 이	소 득	생 계
본 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 우 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수급자	제한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공제

구분		공제금액	비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액 공제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시 한부모공제만 적용
장 애 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 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공 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 ◎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됨.

- ◎ 2014년부터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변경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 보험료공제(전액)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 주택자금공제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상환액의 40%	연300만원	연300만 원	연 300 ~ 1,800 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240만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	연300 ~1,800 만원	*2015.1.1.이후 최초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연 300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투자조합출자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까지	2001.1.1 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공제 등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 1,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납입시)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공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납입확인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
한도금액		연 72만원 한도 (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불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본 공 제

추 가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1+2+3+4-5+6

1	전통시장사용분 X 30%
2	대중교통이용분 X 30%
3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X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제외)
4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선불,직불 사용분) X 15%
5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분 : 최저사용금액 X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분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 X 30%
6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인 경우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 X 50%) X 20%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단,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MIN(한도초과금액, 1+2)을 추가공제
* 1,2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
- 공제금액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 근로자본인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단,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MIN(한도초과금액, 1+2)을 추가공제
* 1,2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
- 공제금액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 근로자본인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 자동차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사회보험료 및 보험료
- 학교 등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과금
- 세금, 전기 수도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통행료
- 상품권 구입비
- 취·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
- 기부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특별공제와 중복적용 여부

구분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율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2014년 귀속 분부터)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5,000만원 초과 ~	3,760만원 + (과세표준 - 15,000만원) X 38%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감 면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정부간 협약에 따른 감면

◎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감 면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 이행기간 제외, 6년 한도)인 청년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일정한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 *2013.12.31.이전 취업한 청년의 경우 100% 감면
 - 2014~2015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50% 감면
 - 2016년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70%(150만원 한도) 적용
- 소득세 감면기간
감면받은 사람이 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감 면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제외

- 임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 1항에 따른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표준

X 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50만원 ~ 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X0.008] → 최저 66만원(4,300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X1/2] → 최저 50만원(7,032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 자녀 1~2명 : 1명당 연 15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신고 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연 30만원 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구분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
“연금저축 ”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DC,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종전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미 신청시 연13만원 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보험료

구분	한도	공제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험 (일반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12%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하는 보험 (장애니전용보장성보험)	연100만원	15%

- 공제 가능한 보험료 확인방법 : 보험료 납입영수증 확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 * 기본공제 미적용 배우자 등을 위한 지출액 포함
 - * 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불가
- 대상 :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 한도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 연 700만원 한도 : 그 밖의 부양가족
- 공제대상
 - 진찰, 진료, 질병예방 의료비(미용, 성형 제외)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안경 및 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등
- 공제 불가
 -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비, 산후조리원, 간병인 비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교육비

- 지출액의 15%
- 본인, 장애인 교육비 : 한도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 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대학생 : 900만원
- 교육비공제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교과서대, 급식비, 특별활동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만 대상, 50만원 이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표준

X 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 공제)
- 대상기부금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 한도

구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정치자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X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X10%)+min[(소득금액X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X30%)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 액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을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미적용시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공제
- 공제요건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됨.
- 공제대상금액 한도 : 750만원(세액공제액 75만원 한도)

감 사 합 니 다

세무사 황철연